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316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3. 2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5,816,0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5,816,0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3. 2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5,826,66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2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D저축은행으로부터 2021. 4. 27. 1,000만 원, 2021. 9. 15. 6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원고는 2023. 6. 16. D저축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D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23. 7. 11.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차전134601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 11. 15. 'C은 원고에게 15,510,568원 및 그중 12,721,214원에 대하여 202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부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2. 3. 24. 사망하였다.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 F, G은 2022. 5. 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2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2. 5. 1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5,72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분할협의 무

협의의 피담보채무액은 3,678만 원이고,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은 36,827,662원이다.

라.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5. 17.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채권액은 15,978,218원이고,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억 8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D저축은행이 C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위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대법원 등기정보센터,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 I저축은행, J저축은행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저축은행은 C 소유의 자동차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통해 채권을 보전 받을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C에게 대여한 점을 고려하여 C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도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D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분할협이의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C은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게 된 셈이 되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였다

고 보아야 한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분할협의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망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4,6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피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5,7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각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억 8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1억 800만 원에서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 36,827,662원을 공제한 71,172,338원(= 1억 800만 원 - 36,827,662원)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5,816,075원(= 71,172,338원 $\times$ 2/9, 원 미만 버림)이 원고의 채권액 15,978,218원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분할합의는 위 15,816,0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해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5,816,0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철근조 슬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

1층 내지 4층 각 311.76㎡, 지층 펌프실 주차장 193.5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 69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조 71.7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95.3분의 43.49 끝.